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9
------	-----

2019. 6. 17.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2월 31일, 강동길 의원(찬성  
의원 10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7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2.25.)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보류)

###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6.)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Ⅱ . 제안설명의 요지(강동길 의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에,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추가하여,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임원 등의 임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출연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 근거법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 하고자 함(안 제1조).
- 조례 적용 대상 출자·출연 기관을 전(全)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출자·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서울시가 출자·출연하는 대상 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안 제출 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9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음.
- 이들 출연기관의 정원은 모두 4,341명이고, 2019년 전체 예산 규모는 8,903억원, 이 중 서울시의 출연금은 3,927억원임<sup>1)</sup>.
- 특히, 2015년 이후 8개의 출연기관이 신규 설립됨으로써 공공

1) 서울사회서비스원은 2019.3. 대표임명, 법인등기를 완료했으나, 2019.7. 중으로 직원 모집이 완료될 예정으로 적용을 제외하였음.

서비스 영역의 급격한 확대와 재정소요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다.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추가(안 제1조)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이하 “법”) 제18조2)를 추가하고 있음.
- 법 제18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출자·출연의 근거와 대의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임.
- 반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음.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 제18조의 사항을 조례에 추가 인용하게 되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더라도 출자·출연이 일부라도 이루어지면 조례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 라.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을 ‘서울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서울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이나 일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간헐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서울주택공사 등의 지방공기업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됨(표1 참조).
-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2조제2항).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법 제18조를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면, 이들 제외 기관들이 다시 조례상에 출자·출연기관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표 1> 출자·출연기관 대상

현 행	개정안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출자·출연기관
1. 서울의료원 2. 서울연구원 3. 산업진흥원 4. 신용보증재단 5. 세종문화회관 6. 여성가족재단 7. 복지재단 8. 문화재단 9. 시립교향악단 10. 디자인재단 11. 장학재단 12. 평생교육진흥원 13. 50플러스재단 14. 디지털재단 15. 120다산콜재단 16. 공공보건의료재단 17. 기술연구원 18. 관광재단 19. 도시건축비엔날레(설립예정) 20. 서울사회서비스원(설립예정)	⇒
	1. 서울의료원 2. 서울연구원 3. 산업진흥원 4. 신용보증재단 5. 세종문화회관 6. 여성가족재단 7. 복지재단 8. 문화재단 9. 시립교향악단 10. 디자인재단 11. 장학재단 12. 평생교육진흥원 13. 50플러스재단 14. 디지털재단 15. 120다산콜재단 16. 공공보건의료재단 17. 기술연구원 18. 관광재단 19. 도시건축비엔날레(설립예정) 20. 서울사회서비스원(설립예정) 21. 지방공기업평가원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4.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25.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6.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처럼,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간의 상호 법적용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외부기관을 규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표 2> 서울시의회 입법·법률자문 의뢰 요약

자문 내용	검토의견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추가 (제1조, 제2조, 제22조의3,4에 대한 법 체계성 위반 여부)	법 체계에 위반됨.	조례의 규율범위를 초과, 효력인정여부가 문제됨.	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출자·출연기관 적용범위 확대)	상위법령에 저촉됨.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인정이 어려움.	상위법령과 상충문제 발생 법체계성에 부합되지 않음.

**마.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면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6항<sup>3)</sup>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현행과 개정 규정간의 중복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임.

**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신설(안 제2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금은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의기관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도 출자·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2항), 서울시도 세출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조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약어의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함.

<표 3> 수정의견(제22조의3)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2조의3( <u>의회동의 및 보고</u> )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	제22조의3( <u>시의회 동의</u> )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시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

사.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시 포함사항 신설(안 제22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출자·출연 사무명

및 추진근거와 필요성, ▷출자·출연 사무의 내용, ▷출자·출연 기관의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출자·출연기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의안 심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있어 동의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출자료 중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로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이 매년 11월 정례회 이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작성·완료되는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결과’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동의안 제출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

<표 4> 수정의견(제22조의4)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① <u>시장이</u> 제22조의3에 따라 제 출하는 출자·출연 동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u>시장이</u> 제22 조의3에 따라 제출하 는 출자·출연 동의안			

	<p>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자·출연 사무명</li> <li>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li> <li>3. 출자·출연 사무 내용</li> <li>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li> <li>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li> <li>6.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li> <li><u>7. 기타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li> <li><u>8. 출자·출연 기관 성과보고서</u></li> </ol>	<p>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자·출연 사무명</li> <li>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li> <li>3. 출자·출연 사무 내용</li> <li>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li> <li>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li> <li>6.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li> <li><u>7.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u></li> <li><u>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li> </ol>
--	--	---

## 아.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서울시가 출자·출연금을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음.
- 이에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조례상의 규율 대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동의안의 제출서류 등을 조례로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과 「지방출자·출연법」 간에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서울시의 소관 사무를 벗어나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정부나 민간기관을 규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법체계상 부합되지 않는 규정은 명확히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이 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규율하는 이 조례에 그 입법취지를 담기에는 관계법령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3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법체계상 조례의 목적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의3항에 반영함 (안 제1조).
- 출자·출연기관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함(안 제2조).
- 중복 규정한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함 (안 제3조).

- 조의 제목을 ‘출자·출연의 동의’로 하고, 시장이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의3).
- 출자·출연 동의안의 일부 제출서류를 현실적으로 제출이 가능한 ‘이사회 회의록’, ‘결산 보고서’로 함(안 제22의4).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9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규율하는 이 조례에 그 입법취지를 담기에는 관계법령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3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법체계상 조례의 목적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의3항에 반영함 (안 제1조).
- 출자·출연 기관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함(안 제2조).

- 중복 규정한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
- 조의 제목을 ‘출자·출연의 동의’로 하고, 시장이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의3).
- 출자·출연 동의안의 일부 제출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2의4).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를 각각 현행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한다.

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u>」 제18조 또는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u>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u>출연하는 출자기관</u>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제3조(조직·인력 운용) <u>출자·출연 기관의 장</u>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p>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u>출자·출연 기관의 장</u>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p>제3조(조직·인력 운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p>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삭제>
<신설>	<p>제22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p>	<p>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p>
<신설>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①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자·출연 사무명</li> <li>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li> <li>3. 출자·출연 사무 내용</li> <li>4. 출자·출연 기관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li> </ol>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개정안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u>6.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u> <u>7. 기타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u>8. 출자·출연 기관 성과            보고서</u>	6. <u>이사회 회의록</u> 7. <u>결산 보고서</u> 8. <u>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신 설>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자·출연 사무명</li> <li>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li> <li>3. 출자·출연 사무 내용</li> <li>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li> <li>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li> <li>6. 이사회 회의록</li> <li>7. 결산 보고서</li> <li>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li> </ol>